

**「배신(配信)의 항변 인정할 수 없다」
통신사 무죄, 수신한 신문사는 유죄**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도쿄 여자의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소녀가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당시의 담당의사(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소되어 1심 무죄, 검찰 측이 항소)가 배신원(配信元)인 「교도통신」과 기사를 게재한 「秋田魁」, 「上毛」, 「静岡」의 세 신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 민사12부는 지난 9월 18일 「교도통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지방 3개 신문에 대해 총 385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이는 「배신(配信) 서비스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 2002년 1월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답습한 판단이다.

문제가 된 것은 「교도통신」이 2002년 7월 「최악의 사태, 왜?」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기사인데, 재판부는 기사의 진실성을 부정한 다음, 「교도통신」에 대해서는 수사본부 등의 발표에 근거하여 사고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견해를 보도한 것이므로 진실상당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방 3개 신문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기사를 송고 받았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기사게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도통신」江渡 편집국 차장은 판결 결과에 대해 『통신사의 배신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내용으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며, 지방 3개

신문은 9월 25일 항소했다. 「교도통신」은 소송에 보조적으로 참가한다.

(『신문협회보』, 2007년 10월 2일자) □

**영국 축구 스타 Ashley Cole,
『Daily Mail』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영국 축구 스타 Ashley Cole이 『Daily Mail』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shley Cole은 5월 8일자 『Daily Mail』지 ‘Des Kelly’ 칼럼이 “Ashley Cole이 전 소속팀이었던 아스날과의 경기를 피하고자 실제로는 전혀 부상당하지 않았으면서도 의도적이고 부정직하게 부상당한 척 했다”고 보도하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shley Cole은 “문제의 칼럼이 공격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Daily Mail』지가 문제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또 기사 발행 전에 자신에게 그 문제에 대해 발언할 적절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shley Cole은 “『Daily Mail』지가 문제의 칼럼을 보도하기 전에 자신과 접촉했다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shley Cole은 “『Daily Mail』지가 어떤 종류의 사과문도 게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명예와 감정에 입힌 피해를 경감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현재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에 더해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고 밝혔다.

한편 Ashley Cole은 문제의 보도에 포함된 몇몇 단어들만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치분 신청도 요구하고 있다.

(Press Gazette 2007년 9월 14일자) □

‘해리포터’ 작가 Rowling, 자신의 아들 초상 출판 금지 처분 소송에서 패해

영국 고등법원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Rowling이 제기한 잡지 발행 금지 처분 신청에 대해 “유명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공공장소에 있을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며 Rowling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owling이 문제를 삼은 것은 한 장의 사진으로 2륜 경마차에 타고 있는 Rowling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 David를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Big Pictures』 소속 사진사가 장거리 렌즈로 찍었고 이를 『Sunday Express』지를 통해 공개했다. 현재 4살인 David는 이 사진이 찍혔을 당시 20개월이었고 2004년 11월 Edinburgh 거리에 있었다. Rowling과 그녀의 남편은 신뢰와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인권법과 정보 보호령 하에서 사적인 정보의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잡지 발행 금지 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영국 고등법원 Patten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표현하려는 미디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감을 표현할 수 있지만 법 자체는 원고가 원하는 모든 것

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자녀들에게 언론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Patten 판사는 “원고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공공장소에서 개인들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atten 판사는 “언급된 법이 성인이나 아동들이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 없이 사진 찍히지 않을 것을 합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초상을 보호하게 하는 권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거리에서 잠깐 거니는 모습도 초상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무엇이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디어 전문 변호사 Mark Stephens는 “모나코의 공주 Caroline이 지난 2004년, 유명인사가 공공장소에 있지만 사적인 행위를 하다 사진에 찍혔을 때 출판물이 그들의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며 “이번 사건과 Caroline 케이스 간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도 Rowling의 사건에 대해 영국 판사들이 내린 판결은 다소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Patten 판사는 Rowling 부부에게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문제의 사진에 대한 발행을 보류시켰다.

(Press Gazette 2007년 8월 8일자) □